
2023학년도 온라인 수업 운영 지침

2023. 3.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중등교육과]

2023학년도 온라인수업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 위탁·운영하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이하 “온라인수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국교육개발원·교육청·학교에서 원활하게 온라인수업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수업 : 면대면 출석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사가 지도하는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수업으로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중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수업만 해당함
2. 온라인수업 교과교사 :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필요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출제 및 평가, 교과 상담, 학습 독려 등을 담당하는 교사
3. 온라인수업 관리교사 :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소속 학교의 학생을 관리감독하고, 온라인수업에 대한 출결 상황 및 성적 등 이수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교사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학교의 정규수업 외 보충과정으로 온라인수업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제4조(종류) 온라인수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충학습과정 온라인수업 : 전·출입, 편입학 등으로 일부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온라인수업
2. 미개설과목 온라인수업 : 단위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을 위한 온라인수업

제5조(수강 자격 등) 출석수업을 대신하여 온라인수업을 통해 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전·출입, 편입학 등으로 일부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으로서, 온라인수업을 통해 해당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2. 단위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하기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학교의 장이

온라인수업을 승인하는 경우

3. 그 외에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강허용 범위) 제5조에 따른 온라인수업의 수강 신청 및 이수의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과 단위의 수가 당해학기에 이수해야 할 교과 단위 수(중학교는 시수)의 20% 이내이며, 한 학기에 2과목 이하인 경우
2. 단, 제6조 제1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장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이수 기준) 온라인수업을 통해 교과를 이수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온라인수업의 **진도율의 80% 이상**을 이수한다.
2. 온라인 수업의 **확인학습 2개를 모두 PASS**한다.

제8조(결과의 기록 등) 온라인수업의 이수가 확정된 학생의 결과 처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과 별표 9의(해설 및 기재요령 포함)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 방식에 따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문장으로 이수내용(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만을 입력**한다.

제9조(교사의 배치) 온라인수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온라인수업 교과교사와 온라인수업 관리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1. 한국교육개발원은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에 따라 온라인수업 교과교사를 배치한다.
2. 교육감은 온라인수업 교과교사에게 별도의 수당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에 따라 온라인수업 관리교사를 배치해야하며,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소속 학교 교과담당 교사 또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등이 겸할 수 있다.

제10조(온라인수업의 관리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관리교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관리교사의 업무

① 구분	② 세부 업무
온라인수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을 통해 신청 가능 교과목 확인 • 신청 학생을 파악한 후 학생 정보 등록(1단계) 및 수강신청(2단계) 실시 • ※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수업 신청 및 운영 매뉴얼 (단위학교용)’참고
온라인수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학생에게 홈페이지 안내 및 회원가입 유도 • 교육청 이수기준 확인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이수 기준 설정 및 안내 • 학습 현황 점검(진도율, 확인학습 제출) 및 학생 학습 독려 • 온라인수업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온라인수업 이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진도율/확인학습 제출 결과 확인 및 평가 실시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이수 판단
온라인수업 학습결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수업 학습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2. 그 외 온라인수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온라인수업을 이수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은 이 지침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